

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2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제안이유

- 상위법령 위반조례 정비 및 「기부금품등 각종 준조세 정비」의 일환으로 민간으로부터의 “성금, 기탁금, 출연금”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품을 접수할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제3조①항 제2호의 “각급 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 성금, 물품 또는 기타재산“을 ”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정 기탁금품 또는 기타재산“으로 개정함.

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별 첨.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관계부처 승인 : 강원도 세회 13300-1471(99.7.1)
-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.

평창군조례 제 호

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정기탁금품 또는 기타재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각급 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 성금, 물품 또는 기타재산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정 기탁금품 또는 기타재산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

☎ 200 - 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번지 / ☎ (0361) 249-2557, 행정 2557 / FAX 249 - 4028
 세무회계과장 : 조광수 세외수입담당 : 손세화 담당자 : 지승태

문서번호	세회 13300 - 14기	선결	과목	연도	지시	조동 정비 추진
시행일자	1999. 7. 1 (2년)	정수	일지	399. 7. 03	결재	지승태
경유			번호	895	공람	
수신	수신처참조	처리과	재무과			
참조	세무(재무)과장	담당자				

제 목 기부금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조례정비 적극 추진

1. 세회 13300-1333('99.6.14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위 호에 의거 기부금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조례정비실적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, 관련 실과 및 시군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각종 준조세 정비차원에서 미정비조례가 금년내에 완전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기금조례근거규정 정비상황 1부. 끝.

강 원 도 지

전결 세무회계과장 조 광 수



수신처 : 거(15,18,32), 더(01~18)

자치단체조례중 기부금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조례근거규정 정비상황

【강원도】

(1999. 6. 1 현재)

구분 단체별	총 조례수	기부금규정 조례수	기부금규정 삭제조례수	기부금규정 미삭제조례수	정비계획
총 계	2,768	35	21	14	
도본청	173	5	0	5	통합 및 개정
시·군계	2,595	30	21	9	
시 계	1,151	14	8	6	
춘천시	180	3	3	0	
원주시	168	4	3	1	'99.12월중
강릉시	158	1	0	1	'99. 7월중
동해시	143	1	0	1	'99. 9월중
태백시	183	2	1	1	'99.10월중
속초시	162	2	1	1	'99.8월폐지
삼척시	157	1	0	1	'99.12월중
군 계	1,444	16	13	3	
홍천군	133	1	1	0	
횡성군	130	3	3	0	
영월군	127	1	1	0	
평창군	122	1	0	1	'99. 7월중
정선군	133	0	0	0	
철원군	131	0	0	0	
화천군	133	2	2	0	
양구군	135	3	3	0	
인제군	139	2	2	0	
고성군	124	2	0	2	'99.12월중
양양군	137	1	1	0	

기부금규정 삭제조례 내역

【강원도】 = 21건

(1999. 6. 1 현재)

구분 단체별	조례명	조례정비일 (조례개정)	삭제내용
도본청			
춘천시	①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②저소득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③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	'98.10.12 '99. 5.10 '99. 5.10	성금, 찬조금, 물품 등 폐지 폐지
원주시	①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 ②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③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	'99. 6.10 '99. 6.10 '98.11. 6	기탁금 성금, 물품 등 기부금
강릉시			
동해시			
태백시	①통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	'98. 9.10	성금, 기탁금 등
속초시	①노인복지설치운영에관한조례	'99. 5.18	성금, 물품, 기타재산
삼척시			
홍천군	①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조례	'99. 1.14	찬조금, 기부금
횡성군	①리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 ②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③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	'97.12.30 '98. 3.12 '99. 5.21	성금, 독지가의 현금 찬조금 성금, 물품, 기타재산
영월군	①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	'98. 3.30	성금, 기탁금
평창군			성금, 물품, 기타재산
정선군			
철원군			
화천군	①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②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	'97. 7.26 '97. 7.26	성금, 기탁금 성금, 물품, 기타재산
양구군	①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영조례 ②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조례 ③향토인재양성을위한장학회설치운영조례	'97. 9.11 '99. 1.18 '99. 3.25	기탁금 성금 기부금
인제군	①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②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	'98. 9.28 '98. 9.28	성금, 물품, 기타재산 성금, 기탁금
고성군			
양양군	①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	'99. 1. 9	성금, 물품, 기타재산

기부금규정 미삭제조례 현황

【강원도】 = 14건

(1999. 6. 1 현재)

구분 단체별	조례명	조례제정일	미삭제사유	정비예정일
도본청	①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동조례	'94.10.12	정비추진중	'99. 9.31
	②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동조례	'88.12.31	상위법제정중	2000.1월
	③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동조례	'89.12.13	정비추진중	'99.12.31
	④ 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	'79.11. 1	④+⑤ 통합	'99.12.31
	⑤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동관리조례	'86.10.17	조례제정	
춘천시				
원주시	① 리·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	'95. 2.15	정비누락	'99.12.31
강릉시	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	'95. 1.19	정비누락	'99. 7.31
동해시	①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동조례	'98. 1.15	정비누락	'99. 9.30
태백시	①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동에관한조례	'95. 6.17	정비누락	'99.10.31
속초시	① 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동조례	'96.10. 9	폐지검토중	'99. 8.31
삼척시	①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동에관한조례	'96. 1. 3	정비누락	'99.12.31
홍천군				
횡성군				
영월군				
평창군	①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동에관한조례	'95. 5. 3	정비누락	'99. 7.31
정선군				
철원군				
화천군				
양구군				
인제군				
고성군	①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동에관한조례	'96. 4.10	정비누락	'99.12.31
	② 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동조례	'96. 6.17	정비누락	'99.12.31
양양군				